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람	기 관 의 장

공 • 보

제 1121 호 2018. 5. 24. (목)

예 규

- 울산광역시 북구 예규 제16호[울산광역시 북구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전부개정지침] 2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132호[도로명주소 고시] 1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133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3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667호[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 1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668호[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 공시] 1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677호[『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678호[『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25

안내

-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회 람

울산광역시 북구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전부개정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권한대행

정호중



2018년 5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 예규 제16호

울산광역시 북구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전부개정지침

울산광역시 북구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소속 직원(울산광역시 북구청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예산 확보
 8. 양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이행을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또는 처리 등을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담당 부서에 고충상담창구를 둔다.

② 구청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 노조임원, 외부전문가(성희롱, 양성평등), 성희롱·성폭력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2명 이상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이 경우 고충상담원에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담당 부시장(이하 “담당부시장”이라 한다)은 고충상담창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사이버신고센터)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②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임명된 날부터 가급적 3개월 이내에 이수한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6조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① 담당부시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집합 교육 등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방안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③ 구청장은 신규 입용된 직원에 대하여 입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 담당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자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자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조사 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 담당부서장은 조사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⑥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⑥ 담당부서장은 조사 진행상황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구청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적절한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 지원,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등과 관계된 내용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관련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등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부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이느 한 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를 2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 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소속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의 종결) 구청장은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6조(징계) ① 구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은폐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여야 한다.

제17조(재발 방지조치 등) ①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일자	확인 과장 국장
		성명	소속부서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대리인 ※ 대리인이 신정 하는 경우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직급	성별		
		직급	성별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성폭력의 중지() 2. 공개사과() 3. 징계 등 인사조치(). 기타()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 여성가족부 2018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표준안)」의 주요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제명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성희롱 방지지침」 → 「울산광역시 북구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 근거법령 추가 : 기존 「양성평등기본법」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추가
- 성희롱(성폭력 추가) 용어 정의 정비(제3조)
-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추가(제5조)
- 고충상담창구에 사이버신고센터 설치 운영 근거 마련(제6조의2)
- 그 외 조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성폭력 추가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 - 132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0길 16-2 외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5. 2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순번	충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역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면촌지구 80B 15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0길 16-2 2018-05-24	옛 지명이며 현지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2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면촌지구 80B 15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0길 16-1 2018-05-24	옛 지명이며 현지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1-02-11	
3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면촌지구 122B 10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0길 43-1 2018-05-24	옛 지명이며 현지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4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274-2, 745-100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4길 16-13 2018-05-24	기존 자연마을인 제내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9-04-08	
5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140-2 외 51필지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로 26 2018-05-24	기존 자연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신천 호성 혜령턴풀레이스
6	울산광역시 북구 호수지구 21B 7L	울산광역시 북구 수동3길 16 2018-05-24	수동마을명칭을 사용하여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3-12-30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 - 133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명촌20길 16	진장명촌지구 80B 15L	2018. 5. 24.	건축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세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5. 24.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8-667호

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

「공직선거법」 제40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선거인명부 열람

가. 열람기간

2018년 5월 27일부터	<input type="checkbox"/>	3일간
2018년 5월 29일까지		

나. 열람시간 :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터넷 열람은 시간 제한없음)

다. 열람장소

장 소 명	소 재 지	비 고(연락처)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2길 10	☎052-241-8311
농소2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찬샘1길 24	☎052-241-8331
농소3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신답로 77	☎052-241-8351
강동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무릉로 1096	☎052-241-8371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70	☎052-241-8411
송정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14길 41	☎052-241-8431
양정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3길 16-1	☎052-241-8451
염포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7	☎052-241-8471

라. 인터넷 열람 홈페이지 주소 : 울산광역시북구청 홈페이지 www.bukgu.ulsan.kr

마. 인터넷 열람방법

- 울산북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팝업존 선거인명부 인터넷 열람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 중복자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끝3자리
추가로 입력한 후 재조회하기
 - ☞ 등재된 경우 : 선거권자의 투표구, 투표장소가 안내됩니다.
 - ☞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님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로 표시됩니다.
- 이의신청은 이의신청하기 클릭 후 작성자, 비밀번호, 이메일, 연락처 등의 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하거나 선거상황지원실(☎052-241-7272)에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 가능합니다.
- * 이의신청기간은 일람기간(2018. 5. 27. ~ 2018. 5. 29.)과 같음.

2. 선거인명부 확정 후 등재여부 등 인터넷 확인

가. 확인기간

2018년 6월 2일부터	<input type="checkbox"/>	12일간(확인시간 제한없음)
2018년 6월 13일까지		

나. 확인대상 :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다. 인터넷 확인 홈페이지 주소 : 울산광역시북구청 홈페이지 www.bukgu.ulsan.kr

라. 인터넷 확인방법

- 울산북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팝업존 선거인명부 인터넷 열람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 중복자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끝3자리
추가로 입력한 후 재조회하기
-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청 자치행정과 선거상황지원실
(☎052-241-7272)로 연락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668호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 공시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선거인명부·거소투표
신고인명부의 사본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사본의 종류	일반사본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광학식디스크(CD)]
	일반용지	라벨용지	
선거인명부	46원 (A4용지 1매당)	218원 (A4라벨용지 1매당)	(1,000원×디스크 개수) +(23원×면수)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46원 (A4용지 1매당)	218원 (A4라벨용지 1매당)	(1,000원×디스크 개수) +(23원×면수)

※ 최종 비용의 원단위 절사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677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급식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문구성 : 19개 조문, 부칙으로 구성
- 나.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다. 지원방법, 급식지원 안내, 급식 신청 절차, 대상자 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 라.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마. 위원회의 구성, 위원 임기, 해임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바. 위원회 회의,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사. 지도·감독,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부터 제17조까지)
- 아.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3.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4. 입법문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6. 14.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52-241-7677, 팩스번호 : 052-241-767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안 전문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보호자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 지원방법) ①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4항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사회복지사
3. 담당 공무원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제2조제1호부터 제8호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공적자료 확인
2. 제2조제9호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제8조에 따른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 및 급식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7.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
8.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9.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0. 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1. 급식지원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급식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3.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아동 급식 지원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복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지도 ·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아동급식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 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 · 점검과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에 대한 검사결과 그 경비를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아동 급식 모니터링)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위생 등을 감시·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또는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18조(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아동 급식지원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락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678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아동수당법」 및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등을 정비하고 아동복지법과 상충 되는 부분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서 아동급식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삭제, 아동수당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제2호)
- 나.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3. 관계법령

- 가. 「아동복지법」 제8조, 제12조, 제3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 나. 「아동수당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10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호,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제2호

4. 입법문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6. 14.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52-241-7677, 팩스번호 : 052-241-767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전문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수당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4조(기능)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정한 사항
2. 아동수당법 제10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2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에 정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영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이 포함이 되게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아동위원

제11조(아동위원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구에 두는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동 단위로 2명으로 하되, 인구 2만명 이상의 동은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2조(아동위원 임기 등)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위원에 관한 제6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은 “아동위원”으로 본다.

제13조(아동위원의 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사회복지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자문 등

제14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한 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4장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제16조(운영)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제 4조에 따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락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